

의안번호	153
발의일자	2022. 11. 17.
회부일자	2022. 11. 22.

제336회 도의회 정례회
제1차 농수산위원회
2022. 11. 28. (월)

『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

농 수 산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장 채 식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박창욱 의원 외 13명

2. 개정이유

- 경상북도 지정 우수농산물 인증을 위해 1997년도에 제작하여 현재까지 사용 중인 「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조의 우수농산물 심벌마크를 변경하여 경북 농특산물의 대외 인지도 제고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농산물 지정·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경상북도우수농산물 심벌마크 변경(별표)

4. 관련법령

- 「농산물품질관리법」
- 「식품산업진흥법」

5. 입법예고 결과

- 예고방법 :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
- 예고기간 : 2022. 11. 22. ~ 11. 27.(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-108호)
- 의견제출 : 없음

6. 검토의견

가. 본 조례안은

- 1997년에 제작된 경상북도우수농산물 심벌마크를 변경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됨

나.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제2조제2호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함

【별 표】

경상북도우수농산물 심벌마크(제2조제2호 관련)



현 행	개 정 안
【별표】 경상북도우수농산물 심벌마크 	【별표】 경상북도우수농산물 심벌마크 

다. 종합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「경상북도 우수농산물」 심벌마크를 변경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됨
- 1997년에 제작된 기존 심벌마크를 시대적 트렌드에 맞추어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됨
- 조례의 형식과 내용 면에서 문제가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련부서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